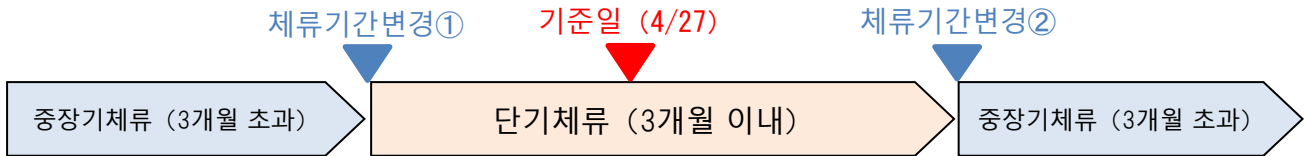


【급부대상자 이미지 (예)】



○ 체류기간변경①로 인해 주민표가 삭제되어 기준일에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상태였다가, 체류기간변경②로 인해 주민표가 작성되어 주민기본대장에 다시 기록되어 있는 상태.

○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<특별정액급부금 사업에 대해>(2020년 4월 30일자 총무성자치행정국지역정책과특별정액급부금실장의 업무연락)에 기재된 <특별정액급부금 급부사업실시 요령>제1장 제3에서 <기준일 이전에 주민기본대장법(1967년 법률 제81호) 제8조 규정에 의거, 주민표가 삭제된 자 중 기준일에 일본국내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모든 시구정촌 주민기본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가 기준일 다음날 이후 비로소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게 된 자>에 해당해 급부대상자로 지정한다.